



대한싱가포르골프협회 정관

승인일: 2026-09-06 시행일: 2026-09-06 Version 1.0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
본 협회의 명칭은 대한싱가포르골프협회(이하 협회)라 한다.

제2조(목적)

협회는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간 골프 교류 및 골프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.

- 골프대회 및 각종 골프행사 개최
- 회원 간 골프 교류 및 친목 도모
- 골프 교육 및 선수지도자 육성
- 골프 관련 국제교류 및 친선활동
- 골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력
- 골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홍보
-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3조(사무소)

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싱가포르에 둔다.

제4조(사업연도)

협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2장 회원

제5조(회원의 구분)

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- 정회원
- 준회원
- 회원사
- 명예회원

제6조(회원 가입)

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협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된다.

제7조(회원의 권리)

정회원은 협회가 개최하는 공식 행사 및 대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.

제8조(회원의 의무)

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협회 정관 및 규정 준수
- 회비 납부
- 협회의 명예와 질서 유지
- 협회 사업 및 행사에 적극 협조

제9조(회원 탈퇴 및 자격상실)

회원은 서면으로 탈퇴할 수 있다.

회비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키릴 수 있다.

제3장 임원

제10조(임원)

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회장 1명
- 부회장 약간 명
- 사무총장 1명
- 재무이사 1명
- 경기이사 1명
- 홍보이사 1명
- 감사 1~2명
- 기타 필요한 임원

제11조(임원의 임기)
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12조(회장의 직무)

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13조(감사의 직무)

감사는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
제4장 총회

제14조(총회)

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한다.

제15조(정기총회)

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.

제16조(총회의 의결사항)

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정관 변경
- 임원 선출
- 사업계획 및 예산
- 결산
- 회비의 결정 및 변경
- 협회의 해산
- 기타 중요한 사항

제5장 운영위원회

제17조(운영위원회)

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제18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

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.

- 협회 사업의 집행
- 회원 가입 승인
- 대회 및 행사 운영
- 예산 집행
- 회원 관리
- 기타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6장 회계 및 회비

제19조(재정)

협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.

- 회원 연회비
- 회원사 회비
- 대회 참가비
- 후원금 및 기부금
- 기타 사업 수입

제20조(회비)

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구분	연회비
정회원	S\$240
준회원	S\$120
회원사	S\$1,200
명예회원	면제

회비 금액은 창립총회 또는 정기총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제21조(회비 납부)

연회비는 매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2조(회계 공개)

협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을 작성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7장 정관 변경 및 해산

제23조(정관 변경)

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24조(해산)

협회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.

제25조(잔여재산)

협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은 관계 법령 및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.

부칙

제1조

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

본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의 관련 규정 및 싱가포르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.

2026년 9월 6일

대한싱가포르골프협회

창립준비위원장: _____